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·설치된 열생산시설 중 가스 터빈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의 검사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7. 3. ~ 8. 18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심사 비대상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3의5] 비고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해 허가·설치된 열생산시설 중 가스 터빈에서 나온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 : 2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) 별표 3의5의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기산일로부터 계산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3의5]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유효기간(제31조의8제1항 관련) (생 략) 비고 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	[별표3의5]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유효기간(제31조의8제1항 관련) (현행과 같음) 비고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해 허가·설치된 열생산시설 중 가스터빈에서 나온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 : 2년